

1. 개정이유

어선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수색·구조도 장기화되어 모든 어선에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의무화하여 어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으나, 모든 어선에 상시착용하도록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계기관 의견조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**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**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 제목“(구명조끼 등의 착용 요건 등)”을“(구명조끼 등의 착용 확인)”
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구명조끼 등의 착용 요건 등)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“기상 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태풍 ·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2.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② (생략)	제13조(구명조끼 등의 착용 확인) <삭 제> (현행 제2항과 같음)